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9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소형준,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 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0조)
- 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21조제1항·제2항)
- 다. 출산축하금 지원금 지급 기한 조정(안 제23조제5항)
- 라.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 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으로”를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0만 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산입하지 않음”을 “산입”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 2. (생 략)	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	1. · 2. (현행과 같음)
	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	3. -----
	녀에 <u>산입하지 않음</u>	-----
4. (생 략)		-- <u>산입</u>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 ④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u>15일</u> 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20일</u>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u>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u>
	<신 설>	<u>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u>
<신 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
		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제29조 (생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